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를 띄워 보내어 떨어지게 하는 행위
2.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
3. 총격 또는 포격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을 날려 보내어 공격하게 하거나 떨어지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제54조의10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피해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제54조의3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2. 제54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제54조의6제2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2.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국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2, 제9조, 별표 1 및 별표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따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5(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제54조의8까지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제5

4조의8까지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을 조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피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지등”이라 한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 및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54조의8까지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다만,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한 조사 결과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결과

3. 제4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⑥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을 제출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6(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라 한다)는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②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이하 이 조에서 “소음피해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경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와 소음영향도 및 제3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음피해지원대상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상황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7(국비 지원) ①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① 제54조의7제4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5제5항 각 호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54조의7제4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

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자 및 지원 금액을 확정된 다음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확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54조의5제5항 및 제5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결과 등의 제출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 및 피해 금액 산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5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54조의9(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4조의10(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의3에 따

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3제5호에 따른 위해 행위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7제4항에 따른 국비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나.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의11(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54조의12(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

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4조의13(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4조의1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4조의14(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4년 5월 28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54조의3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같은 피해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피해 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5월 28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54조의3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는 제5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 법</u> <u>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란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행위를 말한다.</u> 1. 「<u>항공안전법</u>」 제2조제3호 <u>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u> <u>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u> <u>구를 띄워 보내어 떨어지게</u> <u>하는 행위</u> 2. <u>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u> <u>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u> <u>방송”이라 한다)</u> 3. <u>충격 또는 포격</u> 4. 「<u>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u> <u>조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 <u>호에 따른 드론을 날려 보내</u> <u>어 공격하게 하거나 떨어지게</u> <u>하는 행위</u> 5. <u>그 밖에 제1호, 제3호 및 제4</u> <u>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제54조</u> <u>의10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u> <u>원회(이하 “피해지원심의위원</u> <u>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u>

<신 설>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해
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
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하
다)로 인하여 또는 제54조의3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
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2. 제54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제54조의6제2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
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은 피
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
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
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2.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인공 구조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

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2, 제9조, 별표 1 및 별표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원 기준 및 금

<신 설>

액에 따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5(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제54조의8까지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제54조의8까지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을 조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피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한 「지방

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지등”이라 한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 및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54조의8까지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의4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

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다만,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조사 결과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결과

3. 제4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⑥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6(소음방송으로 인한 피

해의 조사 및 신고) ①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라 한다)는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②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이하 이 조에서 “소음피해지원대상 지역”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

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
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소음 피해 신고
서를 접경지역의 시장·군수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는 제
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
과와 소음영향도 및 제3항에 따
른 피해 신고 접수 결과를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소음 피
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
음피해지원대상지역에 실제 거
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4
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
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제출받은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
을 바탕으로 피해 상황 조사가

<신 설>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7(국비 지원) ①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

<신 설>

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의 지급) ① 제54조의7제4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
정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는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5
제5항 각 호에 따라 조사 결과
를 제출한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54조의7제4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은 이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을 할 자 및 지원 금액을 확정
한 다음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
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

<신 설>

된 자에게 확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54조의5제5항 및 제5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결과 등의 제출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 및 피해 금액 산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5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제54조의9(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신 설>

지원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4조의10(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3제5호에 따른 위해행위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7제4항에 따른 국비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직에 있는 사람

나.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

<신 설>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대
표하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54조의11(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
은 사람

<신 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
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54조의12(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심의위
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
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54조의13(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
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4조의12제1항 각 호의 제
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
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신 설>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4조의14(피해지원심의위원회

의 운영) ① 피해지원심의위원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피해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
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
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
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
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피해지원심의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연 락 처	(044) 205 - 4367